

관계부처 협의자료
(2004.5)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안

2004. 5.

환 경 부

1. 제안이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제정·공포(2003.12.31)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장 설치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제9조)

나. 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배출계수에 배출계수별 단위량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다.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전에 이의신청 절차를 두도록 하는 등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함(안 제13조 내지 제16조)

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할 수 있는 범위, 배출허용총량 이전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배출권 계정의 관리 등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안 제18조, 안 제19조)

마. 자발적협약의 체결, 이행결과의 보고 및 그 확인 등 자발적
협약 체결제도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
함(안 제21조 내지 제23조)

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판매자는 저공해자동
차 보급기준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
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다음연도 3
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 안 제25조)

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저공해자동차의 구매비율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환산하여 20%로 정함(안 제 26조)

아.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검
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
공해엔진으로의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0조, 안 제32조)

자.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의 효율을 정하고, 동 장치와
엔진의 인증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3
조 내지 제39조)

차. 친환경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안 제42조, 제43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가스 또는 경질유 [경유·등유·부생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납사·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에 한한다)] 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중 시간당 증발량 0.2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8,800kcal 이상의 보일러와 열량 128,800kcal 이상의 간접가열하는 연소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연료)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압축천연가스
2. 액화석유가스

제2장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 ①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은 국립환경연구원에 둔다.

②연구지원단의 단원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연구원 소속의 공무원과 대기관리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연구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검토·연구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
3.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서에 대한 검토
4. 총량관리사업자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가능 정도에 대한 기술적 검토
5. 수도권의 대기환경용량 산정, 대기오염 모델링과 관련한 조사·연구
6. 그밖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문 및 연구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되,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서울특별시등은 시행계획을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계획이 고시된 후 6월 이내에 수립하여 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현황과 연도별 배출량 증가전망
2. 법 제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배출허용총량 달성을 위한 배출원별,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삭감목표량
3.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개발,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개발계획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로 인해 증가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예상 배출량 및 억제방안
4.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계획 수행을 위한 수단
5. 계획 추진을 위한 투자계획

④서울특별시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시행 및 추진실적 보고) ①서울특별시장등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추진실적 보고서를 매년 5월말까지 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작성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서울특별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진실적 보고서를 시행계획과 대비하여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를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7조(사업장설치의 허가)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단위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장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설치후 5년간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내역서
2.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3.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4. 사업장 설치로 인하여 인접지역의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평가한 결과

5.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일반도,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6. 사용연료 성분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서울특별시장은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장설치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장설치의 변경허가)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장설치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장설치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각호의 서류(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장설치허가증

②서울특별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설치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설치허가증 뒤쪽

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장의 신고 등)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2007년 10월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이 2007년 7월 이후 새로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하여 진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이 정하여 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 직전 5년간의 에너지 사용량, 연료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한다)
2. 신고 신청 직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배출량(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한다)
3.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저감계획서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일반도,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5. 사용연료 성분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6.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서를 수리한 때에

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장설치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 고려사항) 법제16조제2항제7호에서“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이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제11조(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①법 제16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배출계수에 배출계수별 단위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계수와 배출계수별 단위량, 배출계수별 단위량의 확인방법 등 배출량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량관리사업자가 실제의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장에게 제시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청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출량 산정결과의 보고 등)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그 측정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사업자는 연료사용량, 방지시설 가동 현황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월 단위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로 전송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로 전송 또는 제출된 측정결과의 신뢰도,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사업장의 배출량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배출량을 매월 말까지 총량관리 사업자 및 서울특별시시장등에게 통보하고, 사업장별 배출량의 변동내역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총량 계정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①서울특별시시장등은 제7조제3항 또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사업장설치허가증을 교부하는 때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②서울특별시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후 5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11월30일까지 다음 5년 동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제14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에 연도별 할당계수단위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연도별 할당계수단위량은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제품 생산량, 원료 투입량, 공정의 특성, 최적방지기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연도별 할당계수단위량은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할 때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는 경우에 최초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최초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 가동개시일 이후 당해연도 잔여일수/365를 곱한 값으로 한다.

⑤배출허용총량의 할당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한다.

제15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절차) ①서울특별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전에 예정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한 후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총량관리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허용총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배출허용총량을 배출허용총량으로 확정한다.

③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④서울특별시장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장설치허가증에 기재하고 그 내역을 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총량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또한 같다.

제16조(배출허용총량 할당량의 변경) ①서울특별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해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장의 사업장설치허가증을 제출받아 배출허용총량을 기재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1.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배출허용총량을 다음연도에 사용하는 경우
2.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하는 경우

②서울특별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설치 허가 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은 폐쇄연도의 가동일수/365에 폐쇄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곱한 값으로 하고 익연도 부터

의 배출허용총량은 0으로 한다.

제17조(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달리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①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연간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한다.

③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는 사업자와 이전받는 사업자가 동일한 대기환경영향지역(지형 및 기상조건으로 보아 지역안에서 대기오염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에 위치한 경우에 한하여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할 수 있다.

제19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절차)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양당사자의 이름, 이전대상 대기오염물질 및 이전량, 거래가격, 거래시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배출허용총량이전신고서를 별지 5호서식에 따라 작성, 이전 개시 7일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신고서를 검토한 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총량 이전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배출허용총량 이전내역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총량계정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장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으로 인해 당해 지역의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기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배출허용총량계정의 관리) ①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장은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및 변동 내역, 사업장별 월별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허용총량의 이전내역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허용총량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장은 총량관리대상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배출허용총량계정의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 이행계획서 등)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발적협약참여의향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자발적협약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기간

2. 대상년도의 원료사용량, 제품별 생산량 및 연료소비현황

3. 사업장의 오염물질저감 추진 조직체계
4. 사업장내 전 공정별 오염물질 발생현황
5. 오염물질 발생 및 처리공정도
6. 저감대상 오염물질의 저감목표 및 저감계획
7. 오염물질저감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8. 그밖에 저감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장은 협약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이행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협약체결기업을 확정한다.

1. 오염물질저감 목표 및 추진사업의 적정성
2. 오염물질저감 추진조직 및 체계의 적정성
3. 오염물질저감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법의 적합성
4. 그밖에 이행계획서 내용의 적정성

제22조(협약 체결 등) ①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장은 이행계획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업과 별지 제8호서식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현판을 교부한다.

②협약기업이 이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협약기업이 분할 또는 매각(부분매각 포함) 등으로 법인이 변경되어 협약기업의 지위를 승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협약내용

을 충실히 준수하겠다는 약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부분매각 등으로 법인이 분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이행실적보고 및 평가 등) ①협약기업은 당해연도 이행실적보고서를 별지 제 10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연도의 이행실적보고서에는 협약기간 동안의 종합실적보고가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장과 협약기업의 협약내용에 따라 이행실적보고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협약기업이 3/4분기 이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이행실적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대상 오염물질 배출 저감량
2. 오염물질 저감목표 달성 여부
3.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실적 및 환경투자 실적 등

③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기업이 제출한 이행실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오염물질저감량 또는 향후 저감가능 예상량
2. 저감목표대비 달성률 및 투자실적

3. 오염물질의 저감노력 및 향후 투자계획, 투자소요 재원

4. 그밖에 공정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등 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④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장은 협약기업의 이행실적과 협약에 따른 제반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현지점검 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협약기업에 대하여는 이행여부에 따른 현지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⑤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장은 협약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계획서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이행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3. 허위보고, 민원 또는 오염사고 등을 야기하여 자발적 협약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경우

⑥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 보고 및 그 확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24조(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서의 제출 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판매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저공해

자동차보급기준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에 판매된 자동차 판매실적
2. 전년도에 판매된 자동차의 총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3. 당해연도의 차종별·연료별 자동차 판매 계획
4.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 달성을 위한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판매 계획
5. 판매하고자 하는 저공해자동차의 제원 및 저공해자동차인증서 또는 인증계획
6. 계획 이행을 위한 수단
7. 당해연도에 판매계획중인 자동차의 총 오염물질배출부하량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총 오염물질배출부하량의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 ①자동차 판매자는 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보급한 전년도에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급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판매실적

2.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의 총오염물질배출부하 저감량
3. 보급계획 미달성 사유 및 보급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급실적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급계획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저공해 자동차의 구매비율)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이 구매하는 경우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환산하여 20% 이상의 저공해자동차(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산정한다)를 구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종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환산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27조(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 제출) 행정기관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한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을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저공해자동차 우선 구매 권고대상자의 범위)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10대를 말한다.

제29조(특정경유자동차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경유자동차는 별표 4와 같다.

제30조(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1조(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야 하는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말한다.

제32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①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3. 당해 자동차를 폐차

②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부착증명서를,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폐차 증명서를 서울특별시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정도와 당해 자동차의 차종 및 차령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효율)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
가스저감장치의 효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을 75% 이
상 저감하는 장치
2.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 :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을 50% 이
상 저감하는 장치
3.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 :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을 25% 이
상 저감하는 장치

제34조(저공해엔진의 효율)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엔
진은 특정경유자동차를 가스엔진 또는 경유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
체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엔진 또는 경유엔진으로 교체 또는 개
조한 경우의 배출가스 저감효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스엔진 :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 당시의 가스자동차 제
작차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수준
2. 경유엔진 : 교체 또는 개조 당시의 경유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
준을 만족하는 수준

제35조(인증의 신청)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교체 전후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3.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내구성능시험결과서
4.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5. 제품보증에 관한 제조자의 보증서
6.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6조(인증의 변경신청)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성 성능 등에 관한 설명서
3. 변경하고자 하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제37조(인증의 시험 등)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은 다음 각호의 시험으로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장치효율 또는 배출가스 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인증시험
3. 보증기간동안 배출가스의 변화정도를 검사하는 내구성시험(실도로주행시험 포함)
4.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자동차 성능에 미치는 영향
5. 인체에 유해한 이차오염물질의 생성 등에 관한 시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은 국립환경연구원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시험기관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직접 실시하거나 입회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한 인증시험기관은 지체없이 그 시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기관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은 법 제31조에 의한 인증의 기준 및 방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8조(인증의 기준 및 방법)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인증서의 교부 및 확인)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장치 및 엔진에 대하여는 제15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교부 받은 제조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각각에 인증의 주요내용을 부착하여 항시 확인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인증의 주요내용에 관한 규격 및 부착방법 등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한다.

제40조(노후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조기폐차를 권고하는 시점으로부터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에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자동차
2. 차령 10년 미만인 자동차
3.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

②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는 당해 자동차의 잔여 자산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보조금의 신청절차, 지급기준 및 액수산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 ①시·도지사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하는 경우 또는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부착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공해자동차 표지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저공해자동차 표지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에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종류, 유효기간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저공해자동차 표지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표지의 유효기간 동안 차량 앞부분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제5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등

제42조(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 등)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3조(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6장 보 칙

제44조(출입·검사 등) ①법 제36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오염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의하는 경우
2. 법에 의한 허가·신고·등록·인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법 제16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4. 도료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제45조(수수료)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설치의 허가 : 10만원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설치의 변경허가 : 10만원

3. 법 제 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설치의 신고 : 10만원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또는 변경인
증

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국립환경연구
원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인증시험기관이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
우 : 인증 시험기관에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제7장 벌 칙

제46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23조의 규
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별표

		2005 1 1
(SO)	가.	
	(1)	
	(가) 가 50,000m ³ /	
	1)	
	가) 1.0%	270(4)ppm
) 0.5%	270(4)ppm
) 0.3%	180(4)ppm
	2)	270(4)ppm
	() 가 50,000m ³ /	
	1)	
	가) 1.0%	540(4)ppm
) 0.5%	270(4)ppm
) 0.3%	180(4)ppm
	2)	540(4)ppm
(2) ()		
(가)	250(6)ppm	
()		
1)		
가)	500(6)ppm	
)	250(6)ppm	
2)		
가)	250(6)ppm	
)	180(6)ppm	
(SO)	.	400ppm
	.	325(13)ppm

		2005 1 1
(NO)	가.	
	(1)	
	(가) 가 100,000m ³ /	
	1)	250(4)ppm
	2)	105(4)ppm
	() 가 10,000m ³ /	
	100,000m ³ /	
	1)	250(4)ppm
	2)	210(4)ppm
	() 가 10,000m ³ /	
		250(4)ppm
	(2)	
	(가)	270(6)ppm
	()	190(6)ppm
	(3)	200(6)ppm
	(4)	250ppm
	.	
	(1)	230ppm
	(2)	150ppm
	(3)	220(15)ppm
(4) 가	210(11)ppm	
.		
(1) 가 가		
(가)		
1) 가 10,000m ³ /		
가)	250(4)ppm	
)	105(4)ppm	
2) 가 10,000m ³ /		
	250(4)ppm	

		2005 1 1
(NO)	() 1) 가 10,000m ³ / 가)) 2) 가 10,000m ³ / (2)	195(6)ppm 130(6)ppm 195(6)ppm 230(12)ppm
	가. (1) (가) 가 200,000m ³ / 1) 2) () 가 30,000m ³ / 200,000m ³ / () 가 6,000m ³ / 30,000m ³ / () 가 6,000m ³ / 1) 2) (2) () (가) 가 30,000m ³ / () 가 6,000m ³ / 30,000m ³ / () 가 6,000m ³ / . . . (1) (2) (3) 가 (4)	35(4)mg/Sm ³ 30(4)mg/Sm ³ 50(4)mg/Sm ³ 90(4)mg/Sm ³ 150(4)mg/Sm ³ 125(4)mg/Sm ³ 40(6)mg/Sm ³ 45(6)mg/Sm ³ 105(6)mg/Sm ³ 75(7)mg/Sm ³ 75(10)mg/Sm ³ 60(6)mg/Sm ³ 50(6)mg/Sm ³ 50(4)mg/Sm ³ 100(12)mg/Sm ³

		2005 1 1
		60(16)mg/Sm ³
	(1)	
	(가)	50(13)mg/Sm ³
	()	45(13)mg/Sm ³
	(2)	50mg/Sm ³

- : 1. () (0)
- 2. 가 ,
- 가
- 3. (SO) 가 (1)(가)1 2005 1 1
- 125(4)ppm
- 4. (SO) 가 " "
- 34 1
- 5. 가 " " 1
- " "
- 가. 2001 6 30
- . 2001 6 30 가
- . 2001 6 30 가
- 6. 8

[2]

(18)

1	2	3	4	5
10%	20%	30%	40%	50%

- : 1.
2.

[3]

(26)

$$(\%) = \left\{ \left(\frac{\text{ } \times \text{ } }{\text{ } \times \text{ } } \right) \right\} \div \left\{ \left(\text{ } \right) \right\} \times 100$$

- : 1.

		15	16-35	36	3	3-10	10
	0.2	0.5	2.0	3.0	0.5	1.0	2.0

*

- 2.

1	-	1
2	가 , 가	0.5
		0.4
3		0.3
		0.1

[4]

(29)

	2005 1 1	2006 1 1
	, 1	,

[5]

(30)

			가
3.5	2006 12 31	35%	30%
	2007 1 1	30%	25%
3.5	2006 12 31	25%	20%
	2007 1 1	20%	15%

1.

2. 5% 가

3. 5 (3.5 3)

4. 2006 12 31 3.5

가 3 가

1.

	(g/ ())		
	2005.1.1	2007.1.1	2009.1.
1. . .			
1)	75	65	40
2)	140	100	70
3)	50	40	30
4)	50	40	30
5) ()	550	450	380
6) ()	650	500	420
7)	550	450	380
8)	550	450	380
9)	150	100	50
2.			
1) ()	550	450	380
2) ()	700	600	550
3) ()	500	450	380
4) ()	700	600	550
3.			
1) ()	550	450	380
2) ()	700	600	550
3) ()	550	450	380
4) ()	700	600	550
5)	700	600	550
4.			
1)	550	450	380
2)	50	40	30
5. 가			
1)	75	65	30
2)	500	400	380
6.			
1)	800	780	750
2.)	400	300	200

2.

	(g/ ())		
	2005.1.1	2007.1.1	2009.1.1
1.	850	780	780
2. /	650	580	580
3. -single	650	580	420
4. -basecoat	650	580	420
5. -topcoat	650	580	420
6.	900	840	840

3.

	(g/ ())		
	2005.1.1	2007.1.1	2009.1.1
1.	550	450	150

: 1. , 1

가 2

2. 1 5

3. 가
ISO11890-1 (2)

가 (가

가) , 36

가

4. 1 1

[7]

(43)

	(1) 2 /	30(12)ppm
	(2) 2 /	70(12)ppm
	(1) 2 /	30(12)mg/Sm ³
	(2) 2 /	80(12)mg/Sm ³

시행규칙별지

허가번호	사업장설치 허가증							
제 호								
①상호(사업자명칭)			②종 별	종				
③성명 (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⑥업 종			⑦일일조업시간					
⑧연료사용량								
허 가 사 향	⑨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생산 공정	배출 시설	연료 및 원료사용량	용량	수량	방지 시설명	용량	수량
	⑩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 종류 (먼지, SO ₂ , NO ₂)		원료 및 연료 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⑪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오염물질 종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⑫허 가 조 건							
<p>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설치를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서울특별시장 · 인천광역시장 · 경기도지사 (인)</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뒷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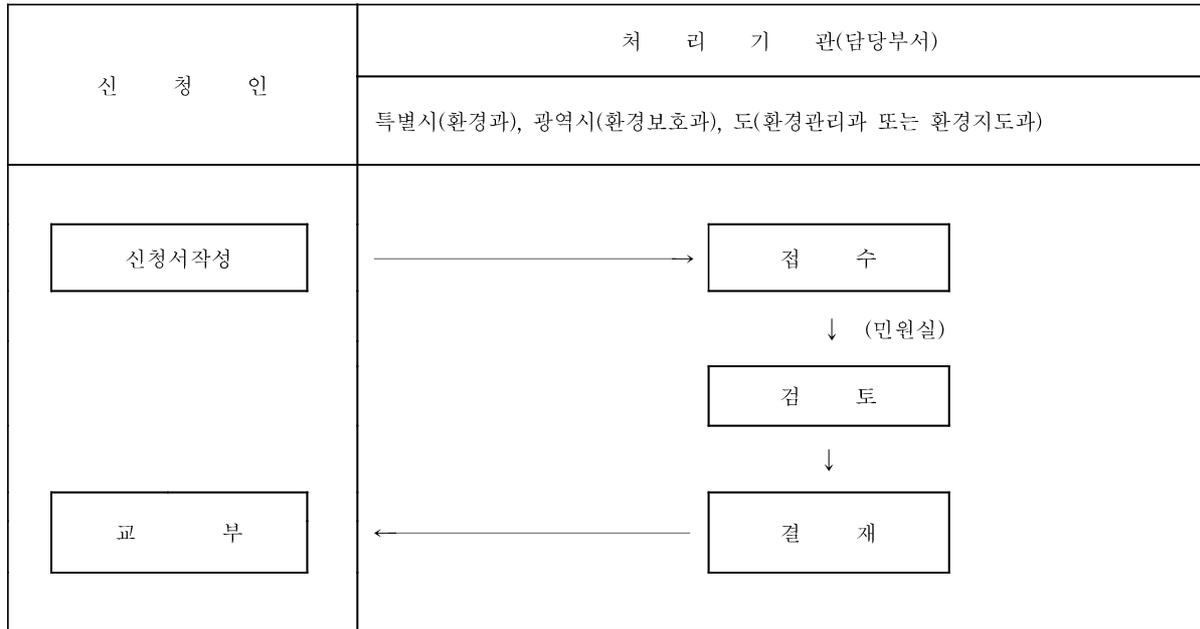
< >

< >

< >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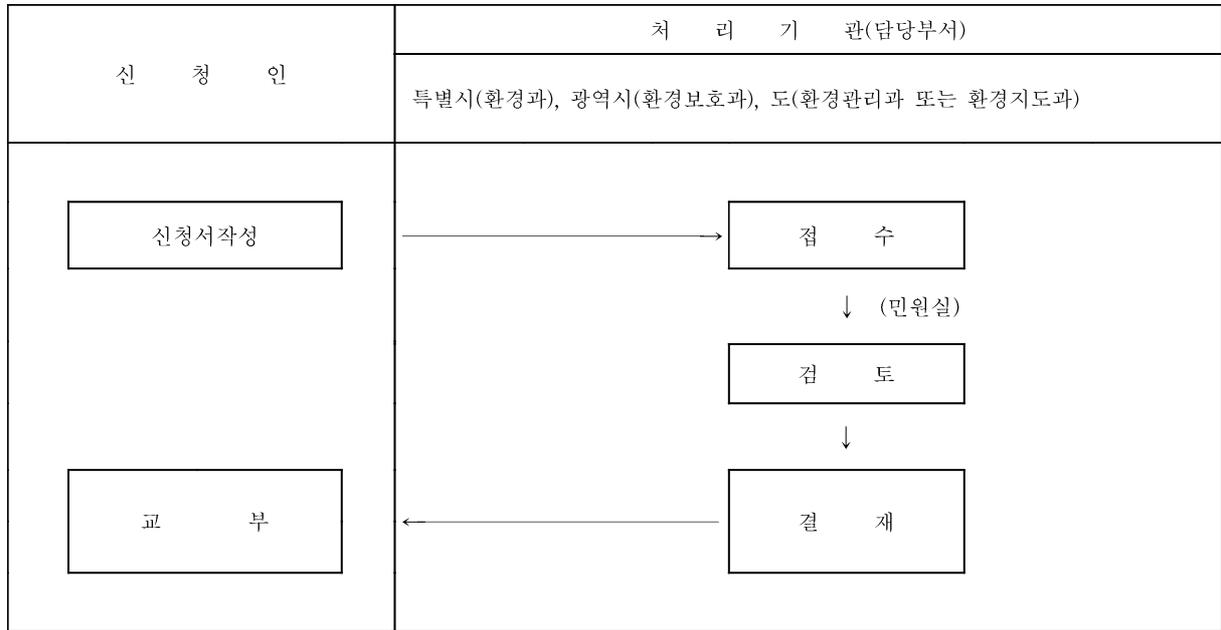


허가 또는 신고번호 제 호	사업장 신고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① 상호(사업자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⑥업 종			⑦주생산품명						
	⑧설치일			년 월 일		⑨가동개시일		년 월 일		
	⑩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생산 공정	배출 시설	휘발성유기 화합물 배출시설 중복여부	용량	수량	방지 시설명	용량	수량		
	⑪배출시설의 조업시간			⑫오염물질 발생량(먼지, SO ₂ , NO ₂)			⑬오염물질 배출량			
	생산 공정	배출 시설	일일조업시간 (연간가동일)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계 수	발생량	종류	배출량	처리방법
<p>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신고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서울특별시장 · 인천광역시장 · 경기도지사 귀하</p>										
※ 구비서류						수수료				
						100,000원				
<p>1. 원료(연료를 포함)의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p> <p>2.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1부.</p> <p>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일반도,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p> <p>4.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뒤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배출허용총량이진신고서

- : _____ (: _____)
- : _____ (: _____)

		()	(kg)	(~)	가 (/kg)

* 배출허용총량 번호: 발행연도, 대기오염물질 종류, 사업장 등의 정보를 일련번호로 구성한 것으로 할당시 부여된 것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18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
총량이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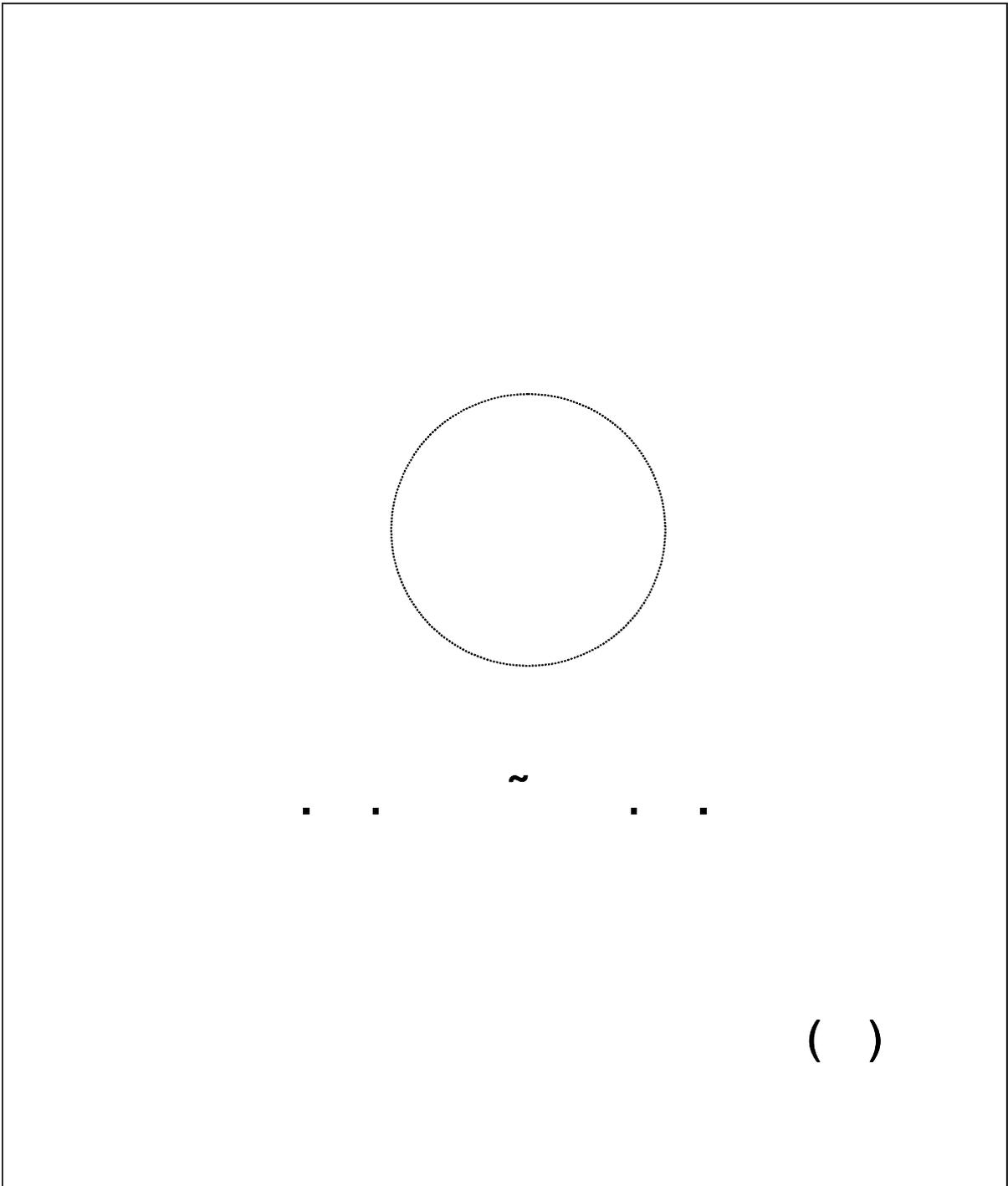
- :

()	()
:	:
:	:
:	:
:	:

년 월 일

환경부장관 귀하

[별지 9호서식]



□ 표시규격

- 크기 : 가로 45Cm × 세로 30Cm × 두께 1.5Cm
- 재질 : 스테인레스스틸판
- 글씨 : 명조체(부식)
- 색채 : 글씨 진파랑색(날짜는 검정), 바탕 : 연노랑색
- 두께 : 0.2m 두께의 검정색테(표시판 외면으로부터 0.8Cm 띄워 표시)

[별지 제11호서식]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								
상 호(사업장명칭)				대 표 자				
소 재 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번호)		담 당 자		
				()				
저공해자동차 구매율(%)								
자동차 보유 현황								
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소형	중형	대형	소형	중형	대형	
당해연도(년) 자동차 구매 현황								
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소형	중형	대형	소형	중형	대형	
저공해자동차 보유 현황(당해년도 포함)								
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소형	중형	대형	소형	중형	대형	
당해연도(년) 저공해자동차 구매 현황								
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소형	중형	대형	소형	중형	대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장 귀 하								
※ 첨부서류 1.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및 구매실적 세부내역 1부. 2. 저공해자동차 구매율 저조 사유서 1부. 3. 향후 저공해자동차 구매 계획 1부.								

257mm×364mm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15호서식]

인 증 번 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		
상 호(사업장명칭)			
성 명(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장치 또는 엔진의 명칭			
장치 또는 엔진의 종류			
장치 또는 엔진의 형식			
인 증 사 항	입자상물질 감소율 등		
	사용연료의 종류		
	장착대상 자동차의 범위		
	기타 사용조건		
	특기사항		
	인 증 조 건		
	1. 인증사항에 명시된 대상자동차 및 사용조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특별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인)			